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
----------	-----

제출년월일 : 2001. . .
제출자 : 영주시장

1. 개정이유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2001. 1. 27 대통령령 제17111호)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등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제1종 · 제2종 ·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석유판매소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5조 내지 제27조)
- 나. 중심 · 일반 · 균린 ·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는 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5미터거리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29조 내지 제32조)
- 다.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이 세로이 세분 ·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석유판매소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부칙 제6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가. 관련법령(발췌) 1부.
- 나. 입법예고 결과 1부.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호, 제26조제10호 및 제27조제10호중 “주유소”를 각각 “주유소·석유
환매소”로 한다.

제29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5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의 바목 및 사목에 규정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중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
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5미터 거리 이내
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0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5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의 아목 및 자목에 규정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중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
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5미터 거리 이내
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차목에 규정된 숙박시설중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5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한다.

② 영 제5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8조제5호의 공장
2.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사설
3.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것에 한한다.)
4.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5.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5미터 거리 이
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별표 1 제14호의 장고시설

7.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9.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을 제외한다.)
10.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32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5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5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8조제3호중 “동법 제57조의3제2항”을 “동법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6조제10호 중 “주유소”를 “주유소·석유판매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영주시도시계획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 9. <생략></p> <p>10.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p> <p>11. ~ 13. <생략></p> <p>제26조(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 9. <생략></p> <p>10.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p> <p>11. ~ 13. <생략></p>	<p>제25조(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p> <p>.....</p> <p>.....</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10.</p> <p>.....(주유소 · 석유판매소</p> <p>.....</p> <p>.....)</p> <p>11. ~ 13. <현행과 같음></p> <p>제26조(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p> <p>.....</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10.</p> <p>.....(주유소 · 석유판매소</p> <p>.....</p> <p>.....)</p> <p>11. ~ 1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 9. <생략></p> <p>10.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p> <p>11. ~ 13. <생략></p> <p>제29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신설></p> <p>영 제5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 9. <생략></p>	<p>제27조(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p> <p>.....</p> <p>.....</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10.(주유소·석유판매소.....</p> <p>.....</p> <p>.....</p> <p>.....)</p> <p>11. ~ 13. <현행과 같음></p> <p>제29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5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의 바목 및 사목에 규정된 숙박시설 및 위탁시설중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탁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5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p> <p>② 영 제51조제2항제7호.....</p> <p>.....</p> <p>.....</p> <p>1. ~ 9.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신설></p> <p>영 제5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 9. <생략></p>	<p>제3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5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의 아목 및 자목에 규정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중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5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p> <p>② 영 제51조제1항제8호</p> <p>.....</p> <p>.....</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제3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신설></p> <p>영 제5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제3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5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자목에 규정된 숙박시설 중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5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p> <p>② 영 제51조제1항제9호</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경 안
<u>5.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u>	<u>5.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5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u>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u>제3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u>	<u>제3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6.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u>	<u>6.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5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u>
<u>7.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u>	<u>7.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5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u>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 2. <생략></p> <p>3.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p> <p>4. ~ 6. <생략></p>	<p>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p> <p>.....</p> <p>.....</p> <p>동법 제68조제2항</p> <p>.....</p> <p>4. ~ 6. <현행과 같음></p>

현 行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6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20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p> <p>1. ~ 9. <생략></p> <p>10.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u>주유소</u>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p> <p>11. ~ 1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6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10.</p> <p>.....(주유소·석유판매소</p> <p>.....</p> <p>.....</p> <p>.....</p> <p>.....</p> <p>.....)</p> <p>11. ~ 13. <현행과 같음></p>

관련 법령 (발췌)

【도시계획법시행령】 - 개정 2001. 1. 27

제17조(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45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로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 6. <생략>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3호관련)

1. <생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 자. <생략>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 카. ~ 파. <생략>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4호관련)

1. <생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 자. <생략>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에 한한다)
 - 카. ~ 꽈. <생략>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5호관련)

1. <생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 자. <생략>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에 한한다)
 - 카. ~ 꽈. <생략>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 마. <생략>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

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생략>

2. <생략>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사. <생략>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 카. <생략>

2. <생략>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자. <생략>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 라. <생략>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바. ~ 차. <생략>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0호관련)

1. <생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 마. <생략>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아. ~ 차. <생략>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6호관련)

1. <생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 나. <생략>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1) <생략>
 -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3) <생략>
 - 라. ~ 사. <생략>

[별표 18]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7조제2항관련)

1. <생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 자. <생략>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 카. ~ 꽈. <생략>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 10. <생략>

11.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탁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주점영업(유홍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다. 특수목욕장
- 라.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 14. <생략>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 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다. 위험물제조소
- 라. 위험물저장소
- 마. 액화가스취급소
- 바. 액화가스판매소
- 사. 유득물보관·저장시설
- 아.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 21. <생략>

입 범 예 고 결 과

- 조례명 :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76호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
- 예고기간 : 2001. 2. 26 ~ 2001. 3. 19(20일간)
- 의견제출여부 : 없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91호
- 의 안 명 :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2. 제안이유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2001. 1.27 대통령령 제17111호)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등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제1종 · 제2종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판매소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25조 내지 제27조)
- 나. 중심 · 일반 · 근린 ·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는, 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 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함.
(안 제29조 내지 제32조)
- 다.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이 새로이 세분 ·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석유판매소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안 부칙 제6조)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도시계획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개정(2001. 1.27)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안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부칙 제6조는 개정령이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기 규정된 건축물(주유소 등) 외 석유판매소를 추가 규정하여, 건축가능여부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경과조치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 제정시 영에 기 규정된 건축물(주유소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의결한 바 있고, 추가된 석유판매소가 위험도 등 주거 환경의 저해정도에 있어 주유소 등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건축 제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시행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9조 내지 제32조는 개정령에서 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 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25m 이내로 정한 것으로,

주택가에 인접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난립방지를 통한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 측면과 건축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 측면을 비교형량하고,

기 형성된 상업지역간의 건축제한상의 형평성과 현재 우리시 주거 및 상업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도로가 주로 중로1류(폭 25m이상 30m미만) 내지 중로3류(폭 12m이상 15m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거리제한 규정을 정하여야 할 것임.

2001. 4.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호 섭